

# 新規性과進歩性判斷

## 特許出願·審判請求時의

〈VI〉

文 滄 華

〈辨理士〉

一 承 前 一

### 特許法과 實用新案法과의 關係

特許法과 實用新案法과는 技術的 思想의 創作을 保護하는 點에서 전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實用新案法上의 原則를 그대로 適用하고 있음이 大部分이다. 그러므로 實用신안법의 規定의 대부분이 特許法를 準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兩者의 差異는 다음에서 列舉하는 數點에 不過하다.

#### (가) 保護의 對象(發明과 考案)

특허법의 保護對象이 “發明”인데 대하여 實用신안법은 “考案”이다(特 1 條, 實 1 條), 즉 발명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思想의 創作中高度의 것”(特 5 條)인데 대하여 고안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의 思想의 창작”(實 3 條)이다.

즉, “발명”은 고도의 창작을 필요로 하는데 대하여 “고안”은 창작이면 足하므로 고도의 필요가 없다(低度이어야 한다는 意味는 아니다).

#### (나) 實用新案(考案)의 登錄要件

##### ① 進歩性 및 新規性

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는 新規性과 進歩性을 필요로 하는 바 고안, 즉 實用신안으로서 登錄되기 위하여는 “발명”과 같이 “新規性”과 “進歩性”을 필요로 한다.

다만, “신규성”에 있어서는 實質上同一의 규정(特 6 條 2 項, 實 5 條 2 項)이나, 진보성에 있어서는 규정의 内容이 相異함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즉, 「발명」의 진보성은 「容易」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데 대하여 「고안」의 진보성은 「극히 용이」하지 아니해도 즉하다는 점인 것이다.

(大法院判例: 63 후 30 및 62 후 6 및 69 후 14 및 70 후 66 및 71 후 11 및 74 후 55 參照)

※ 實用新案權은 他人의 實施를 禁止하는 獨占權이다.

※ 通常의 知識者가 누구나 쉽게 案出할 程度의 것은 實用新案權을 받을 수 없다.

※ 產業發達을 阻害할 低考案이여서는 不可하다.

※ 技術發達의 時代의 感覺에 銳敏해야 된다(交通, 通信, 貿易 등).

※ 特許法上의 용이란 直屬技術分野에서 용이함을 말한다.

실용신안법상의 极히 용이한 關聯技術分野에서 용이함을 말한다.

### 考案의 對象

특허법은 모든 기술사상의 창작을 보호(不特許事項除外)의 대상으로 하므로 「物」 또는 「方法」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對하여 實用신안법은 기술사상의 창작중 「방법을 除外한 “物品”的 “形狀”, “構造” 또는 “組合”에 관계되는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實 5 條).

“발명”과 같이 「방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理由는 制度創設時 外形的 考案을 대상으로 하였음에 緣由한다.

※ 參考, 고안의 대상이 되고 아니되는 것들(“X”표는 안되고 “O”표는 됨을 표시한 것임)

A. 化學物質——유리(X), 合金(X), 시멘트(X)

※ 理由——直接把握이 不能하므로

B. 材料——鐵板(X), 鐵棒(X), 特殊作用效果發生의 特殊形狀인 인고트(O)

C. 電話芳名錄의 臺帳(O), 視力檢查表(O), 電氣回路(O).

D. 材料의 性質만 單純히 利用한 것(X)

E. 組合物對象——볼트와 너트(O), 바둑과 바둑판(O).

## 意匠法

意匠法이란 어떤 것이며, 의장법에서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아래에서記述한다.

의장은人間의五感에呼訴하여觀者로하여금審美感을 불러이르키게하는 물품의外觀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물품을 購入하려고 할 때에 實用上 같은機能과 같은價格일 때에는 必然코 의장으로서 심미감이 優秀한 물품을選擇할 것이다.

기능이多少뒤지고 가격이多少高價인 경우에도 의장으로서 우수한 것일 때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消費財일수록顯著하고 生產財에서는稀少하다). 이와 같은心理를背景으로하여 物品製作者は 다투어意匠의 優秀品의製作에 “権”을傾注한다. 그러기 위하여模倣을禁止하지 아니하는限他人의 의장을盜用製作하려고試圖한다.

本來意匠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발명”“고안”과 같이創作物인 것이다. 단지“특허”와“발명”,“실용신안”,“고안”이自然法則을 이용한技術的効果를 거두는 것을目的으로하고 있음에 대하여“의장”은 인간의審美的心理를 이용하여美的效果를 거두는점에서相違하다.

그러나 다같이“사상의창작물”이라는점에서는“발명”및“고안”과 같다. 따라서 모방으로부터創作者를보호하여“의장”的 창작을積極的으로獎勵할 필요가있음을 말할나위도 없다.

現行意匠法은 의장을 물품의形상, 모양, 또는 색채, 이들의結合으로 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한 미감을이르키게하는 것이다라고定義하고있다(4條).

### (1) 意匠法과 實用新案法과의關係

“의장법”이 물품의形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이르키게하는 창작을 대상으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 물품의形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창작을 보호의 대상으로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실용신안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대하여 의장은美的外觀의 창작인점에서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둘째, 의장이 물품의形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창작인데 대하여 실용신안은 물품의形상구조 또는 조합의 고안이다.

그러므로 물품의 구조에 대한 창작은“의장”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모양 및 색채의 창작은“실용신안”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形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의장이 미적외관의 창작이오 실용신안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는 하나 물품의形상에 관한 창작임에는兩者가同一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물품의“形상”을觀察할 때는“실용신안”일 수도 있고“의장”일 수도 있다.例컨테圓柱鉛筆뿐이 없는社會的與件下에서 6角柱形鉛筆을創案했을 경우,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實用的見地에서 볼 때에는 6각주형이므로因하여冊床 위에서轉落함을防止하는効果를生成함으로써 실용신안으로서取扱할 수도 있고反面意匠의으로는 6각주형연필이美的處理가된것으로看做할 때에는“의장”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지우개”的一端에刷毛를着設한“지우개”도이와 같은 경우에該當된다고하겠다. 그러므로“의장”과“실용신안”的 관계는觀念的으로는 전혀 別個의것이기는 하나 運用의 實際에 있어서는相互共通點이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法律은出願中の“意匠出願”과“實用新案出願”相互間にout願變更이 가능하게규정하고 있는 것이다(意15條, 實9條).

### 意匠의 登錄要件

“登錄”的 대상이 될“의장”은 工業上利用할 수 있어야하며“발명”이나“考査”과 동일하게“신규성”과“진보성”이 필요하다. 이는登錄意匠이獨占權으로서보호를 받게되는 까닭이다.

의장법은의장의特質上新規性,進步性 및不登錄要件등이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상위한 점이 많다.

#### ① 意匠法에 있어서의 工業性이란?

- 工業上利用되는 의장을 말한다.
- 同一物品의量產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 繪畫나彫刻은工業性이 있는 것으로認定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手工業的生產物도 賴산이 가능한 것은 대상이 된다.
- 天然物은 공업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例: 花草, 魚類, 鳥類, 化石, 粘土의塊, 水晶結晶, 貝殼, 人造石 등

但: 木目紋, 竹皮紋 등을紙類에印刷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 ② 新規性이 있다고 認定받지 못하는 경우

- 出願前國內에서公知된 것(5條1項1號)
- 출원전 국내에서公然히 실시된 것(5條1項1號)
- 출원전國內外에서頒布된刊行物에記載된 것(5條1項2號).
- 前各項의 의장에類似한 것(5條1項3號)

※ 위各項의 解決은 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것과大同小異하다.